

규 칙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 의장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likely belonging to the President of the Suncheon City Council.

2019년 12월 20일

순천시의회 규칙 제43호

붙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75조(서류제출요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자료 요구) ① 의원은 시장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법 제103조 및 제104조에 의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자료요구서를 즉시 시장 또는 단체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단체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일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와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서류제출요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